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1월 13일, 송재봉의원 등 14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1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2026.3.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3.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재봉의원)

통상변화대응지원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하여 자금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글로벌 통상환경은 WTO 및 FTA와 같은 기존 다자·자유무역 중심의 통상질서에서 벗어나 각 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개별 국가의 통상조치 시행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가 되었음. 앞으로 이러한 조치들의 시행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통상협정 뿐 아니라 상대국의 자국법에 근거한 일방적인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에 국한되어 있는 지원수단을 보완하여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 통상변화대응 지원범위에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 포함

개정안은 동 법률의 목적 및 통상변화대응 지원기준과 관련된 ‘통상조약 등’의 정의를 확대하여 외국과 체결한 조약 등뿐만 아니라 외국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u>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또는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통상조약</u> ----- ----- -----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통상조약 등”이란 「 <u>통상조약의</u>	1. ----- <u>다음 각 목</u>

현행	개정안
<u>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신설> 2. 3. (생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 -----. 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 무역·통상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 나.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 2. 3.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정부가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통상영향을 예방·극복·최소화하기 위한 ‘통상변화대응’(제2조제2호)을 지원하고, 국제적 공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한 통상피해를 최소화·극복하기 위한 ‘통상피해대응’(제2조제3호)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상변화대응”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통상대응지원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부정적 영향(이하 “통상영향”이라 한다)을 예방하거나 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통상피해대응”이란 통상대응지원업종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국제적 공

이 중 ‘통상피해대응’ 정의 및 지원규정(참고자료 참조)은 2022년 4월 개정법률²⁾에 따라 도입되었는데, 무역피해를 폭넓게 지원하는 미국·EU 등 해외사례와의 형평성³⁾을 감안하여 기존 무역조정지원 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임.

[표 2] 통상변화·피해대응(舊무역조정지원) 제도 변천

구분	'06. 4월	'07. 12월	'12. 1월	'16. 1월	'21. 10월	'25. 1월
법률 명칭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피해 원인	FTA 이행				- FTA 이행 - <u>통상환경</u> <u>급격한 변화</u>	- 통상협정 등 이행 - <u>통상환경</u> <u>급격한 변화</u>
대상 업종	제조업	제조업·서비스업				
적용 협정	자유무역협정					통상협정 등 (FTA + α*)

주: * 최근에는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중심의 FTA뿐만 아니라, 디지털 경제·공급망 대응·포괄적 협력 요소 등이 반영된 형태의 ‘통상협정’ 추진 중

예) 디지털협정(DEPA, DPA),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급망 붕괴 등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통상피해”라 한다)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2) [시행 2022. 4. 20.] [법률 제18503호, 2021. 10. 19., 일부개정]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09590호)

-반면, 미국과 EU의 경우, 우리 무역조정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 세계화조정기금(EGF)을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FTA로 인한 피해에 국한하지 않고 경기 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금융위기 등으로 인한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이는 통상환경이 FTA 등 통상협정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외 충격에 취약한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하는 개정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은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검토에 착수하여 3월 품목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를 시행하고, 4월 상호관세 부과(한국 25%)를 예고하는 등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었는데,

기업이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14조제3항4)에 따라 6개월 이상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이 5% 이상 감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상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 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감소한 경우
 - 나. 6개월 이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0분의 5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통상피해의 주된 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나.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로 인한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다.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교역환경의 현저한 악화
 - 라. 국가 간 분쟁, 국경봉쇄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무역의 현격한 감소
 - 마. 그 밖에 기업의 매출과 고용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무역환경·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소하였거나, 감소할 예정이라는 통상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어서, 개별 기업으로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피해를 조속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지원을 받는데 한계가 있었음.

한편, 현행법 제6조제2항5)에 따르면 기업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지원받는 경우에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실질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적·예방적으로 대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경우 뿐만 아니라 특정 국가의 법령에 따른 무역·통상조치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함으로써, 미국 관세정책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더라도 관련 기업에 대해 적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등)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기업이 실질적 영향(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영향이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것
2.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제1호에 따른 영향의 주된 원인 일 것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주요 무역상대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통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특정 국가의 무역·통상조치를 통상변화대응지원 제도 내에 포함하여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사전적·예방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조치’를 통상조약 등에 포함하고자 하는데, 이에 따르면 ① 법령의 제·개정이나 ② 법령에 따른 관세 인상, 환경기준 신설·강화 등의 무역·통상 관련 제도·기준의 변경뿐만 아니라 ③ 법령에 근거하여 행해지는 단순 통관지연, 검사강화 등의 집행·운영상 행정조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이와 같이 단순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통상변화대응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치별로 경중 및 내용상 편차가 커서 지원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해질 수 있고, 행정조치가 지속적으로 엄격해져 피해가 확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행 통상피해대응 제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외국의 통상조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기존 정의 규정은 통상조약 외에 협약·협정·각서 등의 국제적 합의를 포괄하고자 ‘통상조약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타국

의 일방적인 무역·통상조치는 기존 국제적 합의 개념과 범주가 상이하므로, 이를 ‘등’에 모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통상조약 등’ 용어에 다른 국가의 무역·통상 관련 조치를 포함하기 보다는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판로확보 지원

개정안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 홍보·판매 지원 등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통상조약 및 타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신설).

[표 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판로확보 지원)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그 밖에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현행법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7),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 지원(§9),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10)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도 통상변화대응을 위한 조치를 준용⁶⁾하여 지원하도록 함.

6) 제14조(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⑦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하 생략)

즉, 현행 법률에 따른 지원조치는 주로 기업 역량 강화 및 유동성 공급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 국가가 일방적인 무역·통상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수출액 감소나 시장접근성 저하와 같은 피해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국내외 유통망 확보, 홍보·판매 지원 등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통상조약 및 타국의 무역·통상조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 또는 최소화하고자 하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차질에 따른 피해를 보다 직접적으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2개의 동법 개정안⁷⁾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로확보 지원사업 규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 개정안별 판로개척지원사업 규정 비교

구 분	송재봉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준용)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통상피해대응지원기업 (준용)
판로개척 지원사업 유형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1. 국내외 유통망 확보 및 홍보·판매 지원 3.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1.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2.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7) ① 의안번호 제2214205호, 2025. 11. 13.,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② 의안번호 제2214683호, 2025. 11. 28.,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구 분	송재봉의원안	오세희 의원안	김상훈 의원안
		2. 국외 대체시장 개척 및 수출 마케팅 지원	4.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통상변화 대응 지원 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통상변화 대응 지원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